

업라이즈투자자문 「투자자문계약서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조~6조 (생략)	제1조~6조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<p><b>제7조 (자문연계매매)</b></p> <p>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고, 투자자문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매매를 요청할 시에 금융투자상품의 종류, 수량, 가격, 매매방법, 매매시기 등을 정하여 회사에 요청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고객의 매매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매매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매매거래 성립 시, 회사는 다음의 매매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금융투자상품의 종목, 수량 및 매도·매수의 구분 등 고객의 매매주문내역</li> <li>2.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, 금융투자회사명,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</li> </ol>	자문연계매매 기능의 신설로 관련 조항 신설
제7조~제23조 (생략)	제8조~제24조 (현행과 같음)	조문 번호 순연
<별지> 세부계약조건 (생략)	<별지> 세부계약조건 (현행과 같음)	
부칙 (신설)	부칙 이 약관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	